

생명안전기본법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6. 4. .

제안자 : 행정안전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 가. 기본이념의 각 항 중 국가등의 책무와 중복되는 내용은 삭제함
(안 제2조제2항부터 제4항 삭제).
- 나. 안전사고, 피해자의 정의를 구체화하기 위한 위임 근거를 마련
하고, 안전약자의 유형을 다른 법률을 인용하여 명확히 규정함
(안 제3조).
- 다. 「대한민국헌법」 및 권리 조항을 두고 있는 유사 기본법 사례
를 참조하여 안전권의 주체를 모든 국민으로 수정하고, 대한민
국 영역에 있는 외국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을 것
을 내용으로 별도 항을 신설함(안 제4조).
- 라. 피해자의 권리 중 불명확한 문구를 사용한 부분을 일부를 삭제
하거나 자구를 수정함(안 제5조).
- 마. 기업 등의 책무와 관련하여 책무의 부담 주체를 기업 및 단체
등에서 기업 등으로 수정하여, 책무 부담의 범위가 불분명한 ‘단
체’를 삭제함(안 제7조).
- 바. 생명안전정책위원회의 명칭을 국민생명안전위원회로 수정하고,

심의 및 구성과 관련된 내용을 수정함(안 제9조).

사. 생명안전종합계획의 수립 절차에서 대통령의 승인을 삭제하고, 다른 법률의 계획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생명안전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생명안전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

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0에 근거한 안전지수의 공표와 관련된 내용을 이 법에서 규율하기 위해 반영하고, 안전지수의 개발·조사 및 안전수준 진단 및 취약성 분석을 위한 자료요청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

자. 안전영향 분석·평가의 주체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 수정하고, 대상·방법·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5조).

차. 독립조사기구를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로 구체화하여, 사고조사의 대상, 조사업무 수행의 방법, 정책개선 권고 등을 규정하고(안 제18조), 구체적인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별도의 조로 신설함(안 제19조 신설).

카. 기억과 추모의 대상을 안전사고 및 피해자로 구체화하고, 추모사업의 범위를 일부 조정하였으며, 추모사업을 위탁받은 비영리기관·단체에 대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함(안 제20조).

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업을 공동체사업으로 규정하고, 그 사업의 범위를 신설하였으며, 공동체사업을 위탁받은 비영리기관·단체에 대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함(안 제21조).

파. 벌칙 조항을 고려하여 누설 금지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를 피해자와 안전약자에 관한 정보에서 피해자에 관한 정보로 수정하고, 해당 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4조 및 제25조).

하. 부칙의 시행일 중 제10조(생명안전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13조(안전관련기준의 통합적 관리), 제14조(안전지수의 공표·안전수준 진단 및 취약성 분석), 제15조(안전영향 분석·평가), 제18조(안전사고에 대한 독립적 조사 등), 제19조(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및 부칙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에 대해서는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이 법 시행 이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대상 중 일부는 이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안전사고로 적용례를 신설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일부 조문을 삭제하는 등 다른 법률의 개정사항을 추가함(안 부칙 제1조부터 제3조).

생명안전기본법안에 대한 수정안

생명안전기본법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 중 “사람”을 각각 “국민”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를 “국가에”로, “안전영향평가제도”를 “안전영향 분석·평가제도”로 한다.

안 제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안 제3조제2호 중 “사고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안전사고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으로 하며,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말한다”를 “말한다. 다만, 안전사고를 목격한 사람의 경우에는 안전사고를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사람으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호 각 목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람으로”를 “사람으로서”로 하고, 같은 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국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로 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나.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5호에 따른 노인

다.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

라.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숙인 등

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사. 그 밖에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안전사고에 취약한 사람

안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사람”을 “국민”으로, “종교·국적”을 “종교”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등은 대한민국의 영역에 있는 외국인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 제5조제3항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8호(중전의 제10호) 중 “참여할 권리를 포함하는 진실에 대한”을 “참여를 요구할”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제9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한다.

안 제6조제1항 중 “사람”을 “국민”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람에게”를 “국민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과정에서”를 “과정에서 피해자의 조사 요구 및 조사과정에서의 참여 요구에 성실히 응하는 등”으로, 같은 조 제7항 중 “안전사고의 예방·대비·대응·복구 업무에 종사하는 자, 피해자에 대한 상담·의료 제공 등 각종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자, 관련 수사 및 재판업무에 종사하는 자, 그 밖에 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피해자의”를 “피해자의”

로, “한다”를 “하며, 교육·훈련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한다.

안 제7조의 제목 중 “기업 및 단체”를 “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기업 및 단체”를 각각 “기업”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기업 등”의 범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제9조의 제목 “(생명안전정책위원회)”를 “(국민생명안전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증진하기 위한 주요 안전정책”을 “증진하고 생명존중 안전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생명안전 관련 주요 정책”으로, “심의·조정”을 “심의”로, “생명안전정책위원회”를 “국민생명안전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조정한다”를 “심의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10조”를 “생명존중 안전사회를 위한 기본방향 설정 및 제10조”로, “생명안전종합계획”을 “생명안전종합계획의 수립·변경”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주요 안전정책의 추진실적”을 “산업재해, 자연재난, 교통안전, 어린이 안전대책 및 그 밖의 생명안전 관련 주요 정책의 추진상황”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안전예산의 배분·조정 내역”을 “생명존중 안전사회 관련 예산의 투자 방향”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8호(중전의 제7호) 중 “증진”을 “증진과 생명존중 안전사회 건설”로, “위원장이”를 “인정하여 생명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2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30명”을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40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위촉하는 민간위원”을 “대통령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 위촉위원”으로, “호선으로 선정된 사람”을 “대통령이 지명하는 1명”으로, “한다”를 “된다”로 한다.

7. 생명존중 안전사회 관련 교육 및 홍보,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민
· 관 협력에 관한 사항

④ 생명안전위원회의 위원은 생명안전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안 제10조제2항 중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를 “거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2호 중 “안전정책”을 “생명안전 관련 주요 정책”으로, 같은 항 제7호 중 “안전”을 “생명안전”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생명안전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별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생명안전종합

계획과 부합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안 제1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안전관련기준의 분야, 범위, 평가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제14조의 제목 중 “안전수준”을 “안전지수의 공표·안전수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가등은 생명안전종합계획의 수립 및 전반적인 안전정책의 환류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 관리”를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관리”로, “안전수준 진단 및 취약성에 대한 실태조사·분석을 할”을 “안전수준과 안전의식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지수(이하 이 조에서 “안전지수”라 한다)를 개발·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안전수준”을 “안전지수의 조사 항목·방법·공표절차, 제2항에 따른 안전수준”으로, “취약성 분석”을 “취약성에 대한 실태조사·분석”으로, “실시 시기, 내용 및 사후관리 등”을 “실시 시기·내용·사후관리, 제3항에 따른 자료의 요청 등에 관한”으로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표된 안전지수를 고려하여 시·도별 및 시·군·구별로 안전수준 진단 및 취약성에 대한 실태조사·분석을 할 수 있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지수의 개발·조사, 제2항에 따른 안전수준 진단 및 취약성에 대한 실태조사·분석을 위하여 관

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안 제15조제1항 중 “국가등은”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안전영향분석평가”를 “안전영향 분석·평가”로, “법률로”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② 제1항의 안전영향 분석·평가의 대상이 되는 계획 및 사업이 다른 법률에 따라 안전 관련 사전협의 또는 영향평가를 거친 경우, 이 법에 따른 안전영향 분석·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안 제16조제3항 중 “피해 지역”을 “안전사고가 발생한 피해지역(이하 “피해지역”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반영하여야”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로 한다.

안 제17조의 제목 중 “제공·공개”를 “제공”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기업·단체”를 “기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기업 및 단체”를 “기업”으로 한다.

안 제18조의 제목 중 “조사”를 “조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가등은”을 “국가는”으로, “원인”을 “발생 원인”으로, “및 대응 과정의 적절성”을 “과정의 적정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는 안전사고의 발생 원인과 수습 과정의 적정성을 규명하고, 정책개선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의 업무(이하 “조사업무”라 한다)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사고조사를 실시한다. 이 경우 조사위원회의 조사 기간은 안전사고의 규모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되 신속하게 실시한다.

1.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크거나 안전사고의 영향이 사회적
· 경제적으로 광범위한 안전사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 사고
2.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여 조사를 요구하는 안전사고. 이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사 대상으로 정하는 안전사고. 다만, 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가 개별 법령에 따른 조사기구에서 진행 중인 안전사고는 제외한다.

④ 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3항에 따른 사고조사 및 조사업무
2. 조사보고서의 작성·의결 및 공표
3. 제7항에 따른 조치결과 점검 및 확인에 관한 사항

4. 사고조사에 필요한 조사·연구

5. 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조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이를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요구

2.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3.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 그 밖의 관계 기관·시설·단체 등에 대하여 조사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및 제출된 자료 또는 물건의 보관

4. 관계 기관·시설·단체 등에 대한 사실조회

5.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뢰

6. 조사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한 실지조사

7. 조사대상인 사고조사에 관하여 다른 조사기구의 조사기록, 재판기록 및 그밖의 기록의 열람, 등사, 사본의 제출요구 등을 통한 조사

⑥ 국가등은 조사위원회가 발표하는 조사결과 및 정책개선 사항을 존중하고 이행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책개선 사항에 따

른 조치계획과 이행방안을 조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조사위원회는 개선권고 사항에 대하여 그 조치결과를 점검·확인할 수 있다.

안 제19조부터 제24조를 각각 제20조부터 제25조로 하고,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상임위원은 3명 이내로 한다.

② 조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비상임위원은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대학에서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재해·재난관리 및 안전관리 관련 분야 또는 긴급구조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사고조사와 관련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6.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인권 관련 단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7. 수사·정보수집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조사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조사위원회의 위원은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3. 정당의 당원

⑥ 조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⑦ 조사위원회는 제18조제3항의 사고조사 및 조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⑧ 조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에 지원조직을 둔다.

⑨ 조사위원회, 조사단 및 지원조직의 구성 및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제20조(중전의 제19조)제1항 중 “안전사고의 기억과 추모에”를 “안

전사고 및 피해자를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정되는”을 “인정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조형물·상징물·봉안시설 등을 포함한”을 “추모비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관련”을 “기억과 추모를 위한 관련”으로, “활용을 통한 전시·출판·연구·학술 및 문화사업 및 국제협력사업”을 “관리·전시 및 조사·연구”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업의 원활한”을 “사업(이하 이 조에서 “추모사업”이라 한다)의 원활한”으로, “위하여 사업의”를 “위하여 추모사업의”로, “재단 등”을 “비영리 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에 따른 사업을”을 “추모사업을”로, “유가족을 비롯한 안전사고”를 “추모사업의 효율적 추진과”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기 위한 위원회 구성 등”을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의 재단 등”을 “제3항에 따라 추모사업을 위탁한 비영리 기관·”으로, “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에”를 “추모사업의 수행에”로, “비용을 출연”을 “비용의 전부”로, “보조하여야 한다”를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에”를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추모사업에”로, “지원조직의 설치 등 구체적인 사항은”을 “사항은”으로 한다.

3. 기억과 추모를 위한 관련 자료 및 기념사업에 관한 홍보·교육과 이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배포

4. 안전사고 예방 교육 · 훈련시설의 설치 · 운영

안 제21조(중전의 제20조)제1항 중 “지역사회 · 공동체의”를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로, “안정 · 동질성 유지 · 정신 및 신뢰의 회복 · 재난으로 인한 지역사회의 갈등의 조정 등을”을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업”을 “제2항에 따른 사업(이하 이 조에서 “공동체사업”이라 한다)”으로, “사업의 전부”를 “공동체사업의 전부”로, “관련 공동체”를 “공동체”로, “재단 등”을 “비영리기관 · ”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제2항에 따른 사업을”을 “공동체사업을”로, “유가족을 비롯한 안전사고”를 “공동체사업의 효율적 추진과”로,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기 위한 위원회 구성 등”을 “및 피해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제2항에 따른 재단 등”을 “제3항에 따라 공동체사업을 위탁한 비영리 기관 · ”으로, “사업수행에”를 “공동체사업의 수행에”로, “비용을 출연”을 “비용의 전부”로, “보조하여야 한다”를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 중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에”를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체사업에”로, “지원조직의 설치 등 구체적인 사항은”을 “사항은”으로 한다.

② 국가등은 제1항에 따른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개발·시행
2. 공동체 복합시설의 설치
3. 그 밖에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안 제22조(중전의 제21조) 중 “대피계획”을 “관계 법령에 따라 대피계획”으로 한다.

안 제23조(중전의 제22조)제2항제2호 중 “설치할”을 “운영할”로 한다.

안 제24조(중전의 제23조) 중 “피해자 및 안전약자”를 각각 “피해자”로 한다.

안 제25조(중전의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을 “제24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된 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는 5년”으로, “2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각 호를 삭제한다.

안 부칙 본문을 삭제하고, 제1조부터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8조, 제19조 및 부칙 제3조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4호의2, 제9조제1항제3호의2, 제34조의7 및 제66조의10을 삭제하는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3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사고조사는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안전사고부터 실시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의2, 제9조제1항제3호의2, 제34조의7 및 제66조의10을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제9조제1항제3호, 제3호의2”를 “제9조제1항제3호”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안전에 관한 모든 <u>사람의</u>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안전사고에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보호, 안전사고 피해자의 권리 등을 규정함과 아울러 안전사고의 발생 원인 및 <u>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u> 의한 안전사고 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조사의 보장, <u>안전영향평가제도</u> 등을 규정함으로써 안전사고로부터 모든 <u>사람이</u> 자신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사회를 건설·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국민</u> ----- ----- ----- ----- ----- ----- <u>국가에</u> ----- ----- ----- <u>안전영향 분석</u> · <u>평가제도</u> ----- ----- <u>국민</u> ----- ----- ----- -----.
제2조(기본이념) ① (생 략) ②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안전 관련 법령, 조례, 규칙을 제정·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모든 사람의 실질적인 참여와 안전에 관한 정보에 대</u>	제2조(기본이념) (원안과 같음) <u><삭 제></u>

한 접근을 차별 없이 보장하여
야 한다.

③ 국가등은 안전사고 피해자
의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권리
를 보장하여야 한다.

④ 국가등은 안전약자에게 우
선적으로 특별한 보호를 보장
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생 략)

2. “안전사고”란 「재난 및 안
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에 따른 재난을 비롯하여 사
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사
고를 말한다.

3.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
----말한다.

<삭 제>

<삭 제>

제3조(정의) -----
-----.

1. (원안과 같음)

2. -----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를 말
한다.

3. -----안전사고로 인
하여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
----말한다. 다만, 안전사고
를 목격한 사람의 경우에는
안전사고를 현장에서 직접 목
격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가. <u>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u> <u>한 사람 및 생사가 분명하</u> <u>지 아니한 사람</u>	<u><삭 제></u>
나. <u>안전사고로 인하여 신체</u> <u>적 · 정신적 · 경제적 피해</u> <u>를 입은 사람</u>	<u><삭 제></u>
다. <u>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u> <u>는 사람의 배우자 · 직계존</u> <u>비속 · 형제자매 및 그에</u> <u>준하는 관계가 있는 사람</u>	<u><삭 제></u>
라. <u>안전사고의 구조 · 수습 ·</u> <u>지원 활동으로 사망하거나</u> <u>신체적 · 정신적 · 경제적</u> <u>피해를 입은 사람</u>	<u><삭 제></u>
마. <u>안전사고의 목격자로서</u> <u>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u>	<u><삭 제></u>
바. <u>그 밖에 안전사고로 인하</u> <u>여 신체적 · 정신적 · 경제</u> <u>적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u> <u>서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u> <u>사람</u>	<u><삭 제></u>
4. “안전약자”란 신체적 · 경제 적 · 사회적 · 문화적인 이유 등으로 안전사고에 취약한 <u>사</u> <u>람으로</u>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	4. ----- ----- ----- <u>사</u> <u>람으로서</u> ----- -----

다.

가. 장애인

나. 노인

다. 아동

라. 임산부

마. 환자

바. 노숙인 등

사. 저소득층

아. 다문화가족

자. 이주민

차. 한국어 사용이 원활치 아
니한 사람

카. 공간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고립되어 있어 안전사고에
취약한 사람

타. 그 밖에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안전사고에 취약한
사람

5. “안전관련기준”이란 사람의
안전과 안전사고 피해자의 권
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
직한 안전의 조건 또는 질적
인 수준을 말한다.

--.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나.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5호에 따른 노인

다.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

라. 「모자보건법」 제2조제1
호에 따른 임산부

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숙인
등

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
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
족

사. 그 밖에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안전사고에 취약한
사람

5.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
이라 한다)-----
-----.

제4조(안전권) 모든 사람은 성별
· 종교 · 국적 · 인종 · 세대 · 지
역 · 사회적 신분 · 경제적 지위
등에 관계없이 일상생활과 노
동현장 등에서 안전사고의 위
험으로부터 생명 · 신체 및 재
산을 보호받고 안전하게 살 권
리(이하 “안전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신 설>

제5조(피해자의 권리) ① · ②
(생 략)

③ 피해자는 안전사고의 예방
· 대비 · 대응 · 복구 과정에서
각 호를 포함하는 인도적인 처
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1. · 2. (생 략)

3. 언론 취재 및 일반인의 접근
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4. (생 략)

5.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
의 수색을 요구할 권리

6. ~ 9. (생 략)

제4조(안전권) ① -----국민-----

-----종교-----

② 국가등은 대한민국의 영역
에 있는 외국인을 합리적인 이
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
다.

제5조(피해자의 권리) ① · ②
(원안과 같음)

③ -----

-----.

1. · 2. (원안과 같음)

<삭 제>

3. (원안 제4호와 같음)

<삭 제>

4. ~ 7. (원안 제6호부터 제9

10. 사고원인과 국가등에 의한 안전사고 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고 그 조 사 과정에 <u>참여할 권리를 포 함하는 진실에 대한 권리</u> 11. <u>안전사고 및 그 대응과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책임있는 주체에 대하여 처벌 등 적절 한 제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u> 12. ~ 16. (생략) 제6조(국가등의 책무) ① 국가등 은 모든 <u>사람</u>의 안전권을 보장 할 책무를 지고, 안전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재원의 확충과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② 국가등은 안전 관련 법령이 나 조례, 규칙을 제정·개정하 거나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모든 <u>사람에게</u> 실질적인 참여 와 안전에 관한 정보에의 접근 을 차별 없이 보장하여야 한다.	호까지와 같음) 8. ----- ----- ----- -----<u>참여를 요구할</u>----- <삭 제> 9. ~ 13. (원안 제12호부터 제 16호까지와 같음) 제6조(국가등의 책무) ① ----- -----<u>국민</u>----- ----- ----- ----- ----- -----. ② ----- ----- ----- ----- -----<u>국민에게</u>----- ----- -----.
---	--

③ 국가등은 안전사고의 예방·대비·대응·복구 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약자는 특별히 보호하여야 한다.

④ ~ ⑥ (생략)

⑦ 국가등은 피해자에 대한 이해 증진과 효율적 소통·지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안전사고의 예방·대비·대응·복구 업무에 종사하는 자, 피해자에 대한 상담·의료 제공 등 각종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자, 관련 수사 및 재판업무에 종사하는 자 그 밖에 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피해자의 권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기업 및 단체 등의 책무)

① 기업 및 단체 등은 안전사고의 예방·대비·대응·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국가등의 안전 관련

③ 국가등은 안전사고의 예방·대비·대응·복구 과정에서 피해자의 조사 요구 및 조사 과정에의 참여 요구에 성실히 응하는 등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약자는 특별히 보호하여야 한다.

④ ~ ⑥ (원안과 같음)

⑦ -----

-----피해자의

-----하며,
교육·훈련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기업 등의 책무) ① 기업 -

정책에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② 안전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기업 및 단체 등은 안전사고를
예방·대비·대응·복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보
장하고 안전약자는 특별히 보
호하여야 한다.

③ 기업 및 단체 등은 안전사
고 발생 및 수습현장을 훼손하
거나 안전사고의 원인 및 대응
의 적정성 등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9조(생명안전정책위원회) ① 안
전권을 증진하기 위한 주요 안
전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
여 대통령 소속으로 생명안전
정책위원회(이하 “생명안전위
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생명안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제10조에 따른 생명안전종합
계획에 관한 사항

-----.

② -----
기업-----

-----.

③ 기업-----

-----.

④ “기업 등”의 범위에 대해서
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국민생명안전위원회) ① --
-----증진하고 생명존중 안
전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생명
안전 관련 주요 정책-----
심의-----
국민생명안전위원회-----
-----.

② -----
-----심의한다.

1. 생명존중 안전사회를 위한
기본방향 설정 및 제10조---

2. <u>주요 안전정책의 추진실적</u> 점검에 관한 사항 3. 4. (생략) 5. <u>안전예산의 배분·조정 내역</u> 에 관한 사항 6. (생략) <u><신설></u> 7. 그 밖에 안전권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u>위원장이</u> 심의 에 부치는 사항 ③ <u>생명안전위원회는 위원장 2</u> <u>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30명</u> <u>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u> <u>하여 구성한다.</u> <u><신설></u>	-----<u>생명안전종합계획의 수립</u> <u>· 변경</u>----- 2. <u>산업재해, 자연재난, 교통안</u> <u>전, 어린이 안전 대책 및 그</u> <u>밖의 생명안전 관련 주요 정</u> <u>책의 추진상황</u>----- --- 3. 4. (원안과 같음) 5. <u>생명존중 안전사회 관련 예</u> <u>산의 투자 방향</u>----- 6. (원안과 같음) 7. <u>생명존중 안전사회 관련 교</u> <u>육 및 홍보, 안전문화 확산을</u> <u>위한 민·관 협력에 관한 사</u> <u>항</u> 8. -----<u>증진과 생명</u> <u>존중 안전사회 건설</u>----- -----<u>인정하여 생명안</u> <u>전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u> <u>의</u>----- ③ -----<u>1</u> <u>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u> <u>40명</u>----- -----. ④ <u>생명안전위원회의 위원은</u> <u>생명안전 관련 분야의 학식과</u>
---	--

<신 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정된 사람이 공동으로 한다.

⑤ (생략)

제10조(생명안전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생략)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생명안전종합계획안을 작성하고, 생명안전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생명안전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대통령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 위촉위원-----
-대통령이 지명하는 1명이-----
-----된다.

⑦ (원안 제5항과 같음)

제10조(생명안전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원안과 같음)

② -----

-----거쳐-----
-----.
-----.

③ -----

--.

1. (생략) 2. 안전권 보장을 위한 <u>안전정책</u>의 기본 방향 3.~6. (생략) 7. <u>안전</u>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8.~11. (생략) <u><신설></u> ④ <u>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명안전종합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그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매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제11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생략) <u><신설></u>	1. (원안과 같음) 2. -----<u>생명안전</u> 관련 주요 정책----- 3.~6. (원안과 같음) 7. <u>생명안전</u>----- 8.~11. (원안과 같음) ③ <u>생명안전종합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④ <u>생명안전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11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① (원안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u>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별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u>
---	--

제13조(안전관련기준의 통합적
관리) ① ~ ③ (생 략)
<신 설>

제14조(안전수준 진단 및 취약성
분석) ① 국가등은 생명안전중
합계획의 수립 및 전반적인 안
전정책의 환류 체계를 구축하
고, 안전 관리 역량의 제고를
위하여 시·도별 및 시·군·
구별로 안전수준 진단 및 취약
성에 대한 실태조사·분석을
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생명안전종합계획과 부합하도
록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안전관련기준의 통합적
관리) ① ~ ③ (원안과 같음)
④ 안전관련기준의 분야, 범위,
평가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안전지수의 공표·안전수
준 진단 및 취약성 분석)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관리---
-----안전수준과 안
전의식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지수(이하 이 조에서 “안전지
수”라 한다)를 개발·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표된 안전지수를 고려
하여 시·도별 및 시·군·구
별로 안전수준 진단 및 취약성
에 대한 실태조사·분석을 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지수의 개발·조사,
제2항에 따른 안전수준 진단
및 취약성에 대한 실태조사·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수준 진단 및 취약성 분석의 실시 시기, 내용 및 사후관리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안전영향 분석·평가) ① 국가등은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을 말한다)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신 설>

분석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안전지수의 조사 항목·방법·공표절차, 제2항에 따른 안전수준-----취약성에 대한 실태조사·분석---실시 시기·내용·사후관리, 제3항에 따른 자료의 요청 등에 관한-----
-----.

제15조(안전영향 분석·평가) 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

② 제1항의 안전영향 분석·평가의 대상이 되는 계획 및 사업이 다른 법률에 따라 안전 관련 사전협의 또는 영향평가

② <u>안전영향분석평가</u>의 대상 · 방법 ·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u>법률</u>로 정한다. 제16조(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지원의 원칙) ① · ② (생략) ③ 국가등은 피해자 및 <u>피해지역</u>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 · 시행할 때에 피해자의 의견을 듣고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국가등은 피해자에 대한 배 · 보상 등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견을 <u>반영하여야</u> 하고, 구제절차와 피해 입증을 위한 자료 등의 정보를 피해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7조(안전사고에 관한 정보의 제공 · 공개) 피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가등 또는 관련 <u>기업 · 단체</u>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를 거친 경우, 이 법에 따른 <u>안전영향 분석 · 평가</u>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u>안전영향 분석 · 평가</u>----- ----- ---<u>대통령령</u>으로-----. 제16조(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지원의 원칙) ① · ② (원안과 같음) ③ -----<u>안전사고</u>가 발생한 <u>피해지역</u>(이하 “<u>피해지역</u>”이라 한다)----- ----- -----. ④ ----- ----- -----<u>반영하도록 노력하여</u> <u>야</u>----- -----. 제17조(안전사고에 관한 정보의 제공) ----- ----- -----<u>기업</u>----- -----
---	--

한 안전사고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생략)

2. 안전사고의 발생에 책임이 있는 국가등 또는 관련 기업 및 단체 등의 명칭·소재지·안전사고원인·재발방지대책·피해지원과 회복에 관한 사항

3. (생략)

제18조(안전사고에 대한 독립적 조사) ① 국가등은 안전사고의 원인과 수습 및 대응 과정의 적절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조사(이하 “사고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등은 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를 위하여 독립적으로 안전사고의 발생 원인과 수습 및 대응과정의 적정성을 조사하고, 정책개선을 권고하며 권고안 이행을 점검할 수 있는

-----.

-----.

1. (원안과 같음)

2. -----
-----기업

--

3. (원안과 같음)

제18조(안전사고에 대한 독립적 조사 등) ① 국가는-----
--발생 원인-----과정의 적정성-----

-----.

② 국가는 안전사고의 발생 원인과 수습 과정의 적정성을 규명하고, 정책개선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의 업무(이하 “조사업무”라 한다)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

조사기구(이하 “독립조사기구”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독립조사기구는 예산 및 인사 등에 있어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속으로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사고조사를 실시한다. 이 경우 조사위원회의 조사 기간은 안전사고의 규모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되 신속하게 실시한다.

1.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크거나 안전사고의 영향이 사회적·경제적으로 광범위한 안전사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사고

2.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여 조사를 요구하는 안전사고. 이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사 대상으로 정하는 안전사고. 다만, 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가 개별 법령에 따른 조사기구에

④ 국가등은 독립조사기구가 발표하는 조사결과 및 정책개선 권고를 존중하고 이행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독립조사기구의 조직, 구성, 조사의 대상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신 설>

서 진행 중인 안전사고는 제외한다.

④ 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3항에 따른 사고조사 및 조사업무
2. 조사보고서의 작성·의결 및 공표
3. 제7항에 따른 조치결과 점검 및 확인에 관한 사항
4. 사고조사에 필요한 조사·연구
5. 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조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이를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요구

<u><신 설></u>	<u>2.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u>
<u><신 설></u>	<u>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u>
	<u>3.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 그</u>
	<u>밖의 관계 기관·시설·단체</u>
	<u>등에 대하여 조사업무에 필요</u>
	<u>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u>
	<u>물건의 제출요구 및 제출된</u>
	<u>자료 또는 물건의 보관</u>
<u><신 설></u>	<u>4. 관계 기관·시설·단체 등에</u>
	<u>대한 사실조회</u>
<u><신 설></u>	<u>5.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뢰</u>
<u><신 설></u>	<u>6. 조사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u>
	<u>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u>
	<u>소에 대한 실지조사</u>
<u><신 설></u>	<u>7. 조사대상인 사고조사에 관하</u>
	<u>여 다른 조사기구의 조사기</u>
	<u>록, 재판기록 및 그 밖의 기</u>
	<u>록의 열람, 등사, 사본의 제출</u>
	<u>요구 등을 통한 조사</u>
<u><신 설></u>	<u>⑥ 국가등은 조사위원회가 발</u>
	<u>표하는 조사결과 및 정책개선</u>
	<u>사항을 존중하고 이행방안을</u>
	<u>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책</u>
	<u>개선 사항에 따른 조치계획과</u>
	<u>이행방안을 조사위원회에 제출</u>
	<u>하여야 한다.</u>

<신 설>

<신 설>

⑦ 조사위원회는 개선권고 사항에 대하여 그 조치결과를 점검·확인할 수 있다.

제19조(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상임위원은 3명 이내로 한다.

② 조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비상임위원은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대학에서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재해·재난관리 및 안전관리 관련 분야 또는 긴급구조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사고조사와 관련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6.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인권
관련 단체에 10년 이상 종사
한 사람

7. 수사·정보수집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조사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
임할 수 있다.

④ 조사위원회의 위원은 외부
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
고 독립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
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
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

람

3. 정당의 당원

⑥ 조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⑦ 조사위원회는 제18조제3항의 사고조사 및 조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⑧ 조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에 지원조직을 둔다.

⑨ 조사위원회, 조사단 및 지원조직의 구성 및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기억과 추모) ① 국가등은 안전사고의 기억과 추모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등은 제1항에 따른 기억과 추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

제20조(기억과 추모) ① ----- 안전사고 및 피해자를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하여-----
-----.

② -----

---인정하는-----

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추모공원 · 추모기념관 · 조형물 · 상징물 · 봉안시설 등을 포함한 추모 관련 시설의 건립 및 조성

2. 관련 자료의 수집 · 보존 · 활용을 통한 전시 · 출판 · 연구 · 학술 및 문화사업 및 국제협력사업

3. 현장의 보존 · 관리 · 조사 · 홍보 및 연구사업

4. 교육 · 체험관의 설립

5. · 6. (생 략)

③ 국가등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억과 추모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 등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국가등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유가족을 비롯한 안전사고 피해자 등 이

-----.

1. -----추모비
등-----

2. 기억과 추모를 위한 관련---
-----관리 · 전시
및 조사 · 연구

3. 기억과 추모를 위한 관련 자료 및 기념사업에 관한 홍보 · 교육과 이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 배포

4. 안전사고 예방 교육 · 훈련시설의 설치 · 운영

5. · 6. (원안과 같음)

③ -----사
업(이하 이 조에서 “추모사업”이라 한다)의 원활한-----
위하여 추모사업의-----

-----비영리 기관 · -----
-----.

④ -----추모사업을-----
-----추모사업의 효율적
추진과-----이해관계자

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기 위한
위원회 구성 등 절차를 마련하
여야 한다.

⑤ 국가등은 제3항의 재단 등
단체에 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
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
에 필요한 지원조직의 설치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공동체 회복) ① 국가등은
안전사고로 영향을 받은 지역
사회·공동체의 심리적 안정·
동질성 유지·공동체 정신 및
신뢰의 회복·재난으로 인한
지역사회의 갈등의 조정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 설>

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필요한
-----.

⑤ -----제3항에 따라 추
모사업을 위탁한 비영리 기관
·-----추모사업의 수행에--
-----비용의 전부-----일부
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
한 사항 외에 추모사업에-----
---사항은-----
-----.

제21조(공동체 회복) ① -----
-----피해
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

② 국가등은 제1항에 따른 심
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개

② 국가등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공동체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 등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등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유가족을 비롯한 안전사고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기 위한 위원회 구성 등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등은 제2항에 따른 재단 등 단체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에 필요한 지원조직의 설치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발 · 시행

2. 공동체 복합시설의 설치

3. 그 밖에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제2항에 따른 사업(이하 이 조에서 “공동체사업”이라 한다)-----
-----공동체사업의 전부-----
-----공동체-----
-----비영리 기관 .-----
-----.

④ -----공동체사업을-----
-----공동체사업의 효율적 추진과-----및 피해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필요한-----
-----.

⑤ -----제3항에 따라 공동체사업을 위탁한 비영리 기관 .-----공동체사업의 수행에-----비용의 전부-----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체사업에-----
-----사항은-----
-----.

제21조(안전약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 국가등은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안전약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피계획과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지원체계의 확립 등) ① (생 략)
 ② 국가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안전약자와 피해자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1. (생 략)
2. 안전약자와 피해자의 지원을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할 것

제23조(피해자 정보 누설의 금지) 이 법에 따라 피해자 및 안전약자에 대한 지원, 안전사고 관련 정보의 공개 등 관련 업무에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피해자 및 안전약자에 관한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안전약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 -----

 -----관계 법령에 따라 대피계획-----
 -----.

제23조(지원체계의 확립 등) ① (원안과 같음)
 ② -----

 -----.

1. (원안과 같음)
2. -----
 -----운영할-----

제24조(피해자 정보 누설의 금지) -----피해자-----

 -----피해자-----

 -----.

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자
2. 제23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5조(벌칙) 제24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된 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는 5년-----5천만원-----.

<삭 제>

<삭 제>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8조, 제19조 및 부칙 제3조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4호의2, 제9조제1항제3호의2, 제34조의7 및 제66조의10을 삭제하는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3항 제1

	<u>호 및 제3호에 따른 사고조사는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안전사고부터 실시한다.</u> <u>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u> <u>제3조제4호의2, 제9조제1항제3호의2, 제34조의7 및 제66조의10을 각각 삭제한다.</u> <u>제10조제1항제1호 중 “제9조제1항제3호, 제3호의2”를 “제9조제1항제3호”로 한다.</u>
--	--

생명안전기본법안

(박주민의원 · 용혜인의원 · 한창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8779
----------	------

발의연월일 : 2025. 3. 10.

발 의 자 : 박주민 · 용혜인 · 한창민
권향엽 · 박희승 · 김 윤
차지호 · 박지원 · 박정현
박해철 · 김우영 · 윤준병
이용선 · 임미애 · 장철민
이재정 · 민병덕 · 김문수
김남희 · 황명선 · 허성무
이용우 · 추미애 · 박홍근
김종민 · 서미화 · 전종덕
남인순 · 박은정 · 정동영
채현일 · 정춘생 · 박지혜
김정호 · 이정문 · 김 현
이수진 · 장종태 · 김선민
송옥주 · 신장식 · 이해민
이연희 · 강준현 · 백선희
김재원 · 김준혁 · 이광희
손명수 · 김준형 · 김예지
김영환 · 소병훈 · 김영배
윤종오 · 위성곤 · 김남근
강경숙 · 황운하 · 송재봉
전진숙 · 이학영 · 고민정
장경태 · 윤종균 · 진성준

이재강 · 정준호 · 김한규
김영호 · 한정애 · 김기표
박홍배 · 임호선 · 서왕진
김동아 · 강득구 의원
(77인)

제안이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의 발생은 직접적인 인적·물적 피해 이외에도 다양한 사회적 부담과 갈등을 유발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재난 및 각종 사고에 관한 주요 법령만으로는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사람의 안전권을 명시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며, 생명안전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과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생명안전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안전에 관한 모든 사람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안전사고에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보호, 안전사고 피해자의 권리 등을 규정함과 아울러 안전사고의 발생 원인 및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안전사고 대응의 적정성

에 대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조사의 보장, 안전영향평가제도 등을 규정함으로써 안전사고로부터 모든 사람이 자신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사회를 건설·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안전사고”란 재난을 비롯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사고를 말함(안 제3조).

다. 모든 사람은 성별·종교·국적·인종·세대·지역·사회적 신분·경제적 지위 등에 관계없이 일상생활과 노동현장 등에서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생명·신체·재산을 보호받고 안전하게 살 권리를 가짐(안 제4조).

라. 국가등은 모든 사람의 안전권을 보장할 책무를 지고, 안전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재원의 확충과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6조).

마. 정부는 안전권을 증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국가 차원의 안전권 보장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10조).

바. 국가등은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를 위하여 국제적인 기준 등을 고려하여 안전관련기준을 설정하고, 안전관련기준의 적정성 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안 제13조).

사. 국가등은 안전사고의 원인과 대응 및 수습 과정의 적절성에 대하여 전문적·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수행하는 별도

의 독립조사기구를 설치하여야 함(안 제18조).

아. 국가등은 안전사고로 영향을 받은 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20조).

※ 원안에 대한 수정사항

가. 기본이념의 각 항 중 국가등의 책무와 중복되는 내용은 삭제함(안 제2조제2항부터 제4항 삭제).

나. 안전사고, 피해자의 정의를 구체화하기 위한 위임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약자의 유형을 다른 법률을 인용하여 명확히 규정함(안 제3조).

다. 안전권의 주체를 모든 국민으로 수정하고, 대한민국 영역에 있는 외국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을 것으로 별도로 함을 신설함(안 제4조).

라. 피해자의 권리 중 일부를 삭제하거나 자구를 수정함(안 제5조).

마. 기업 등의 책무와 관련하여 책무의 부담 주체를 기업 및 단체 등에서 기업 등으로 수정하여 ‘단체’를 삭제함(안 제7조).

바. 생명안전정책위원회의 명칭을 국민생명안전위원회로 수정하고, 심의 및 구성과 관련된 내용을 수정함(안 제9조).

사. 생명안전종합계획의 수립 절차에서 대통령의 승인을 삭제하고, 생명안전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생명안전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 등에 필요

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

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0에 근거한 안전지수의 공표와 관련된 내용을 이 법에서 규율하기 위해 반영하고, 안전지수의 개발·조사 및 안전수준 진단 및 취약성 분석을 위한 자료요청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

자. 안전영향 분석·평가의 주체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 수정하고, 대상·방법·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5조).

차. 독립조사기구를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로 구체화하여, 사고조사의 대상, 조사업무 수행의 방법, 정책개선 권고 등을 규정하고(안 제18조), 구체적인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별도의 조로 신설함(안 제19조 신설).

카. 기억과 추모의 대상을 안전사고 및 피해자로 구체화하고, 추모사업의 범위를 일부 조정하였으며, 추모사업을 위탁받은 비영리기관·단체에 대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함(안 제20조).

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업을 공동체사업으로 규정하고, 그 사업의 범위를 신설하였으며, 공동체사업을 위탁받은 비영리기관·단체에 대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함(안 제21조).

파. 누설 금지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를 피해자에 관한 정보로

수정하고, 해당 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4조 및 제25조).

하. 부칙의 시행일 중 제10조(생명안전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13조(안전관련기준의 통합적 관리), 제14조(안전지수의 공표·안전수준 진단 및 취약성 분석), 제15조(안전영향 분석·평가), 제18조(안전사고에 대한 독립적 조사 등), 제19조(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이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대상 중 일부는 이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안전사고로 적용례를 신설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일부 조문을 삭제하는 다른 법률의 개정을 추가함(안 부칙 제1조부터 제3조).

생명안전기본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안전에 관한 모든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안전사고에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보호, 안전사고 피해자의 권리 등을 규정함과 아울러 안전사고의 발생 원인 및 국가에 의한 안전사고 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조사의 보장, 안전영향 분석·평가제도 등을 규정함으로써 안전사고로부터 모든 국민이 자신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사회를 건설·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안전사고의 예방·대비·대응·복구의 과정에서 모든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인 권리를 차별 없이 보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안전”이란 안전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위협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2. “안전사고”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비롯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를 말한다.

3. “피해자”란 안전사고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안전사고를 목격한 사람의 경우에는 안전사고를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4. “안전약자”란 신체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인 이유 등으로 안전사고에 취약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나.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5호에 따른 노인

다.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

라.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숙인 등

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사. 그 밖에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안전사고에 취약한 사람

5. “안전관련기준”이란 사람의 안전과 안전사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가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안전의 조건 또는 질적인 수준을 말한다.

제4조(안전권) ① 모든 국민은 성별·종교·인종·세대·지역·사회적

신분·경제적 지위 등에 관계없이 일상생활과 노동현장 등에서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받고 안전하게 살 권리(이하 “안전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② 국가등은 대한민국의 영역에 있는 외국인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피해자의 권리) ① 피해자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하고 적절한 구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피해자는 예방·대비·대응·복구 과정에 대한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받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피해자는 안전사고의 예방·대비·대응·복구 과정에서 각 호를 포함하는 인도적인 처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1. 차별받지 아니하고 혐오로부터 보호받으며 필요한 조력을 받을 권리

2.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3. 사망자의 시신을 인도적으로 인계받을 권리

4. 유품을 인도적으로 인계받을 권리

5. 다른 사람들과 회합하고 필요한 조력을 받을 권리

6. 생활지원·의료지원·심리치료지원·치유휴직 및 재취업지원·고용유지지원·이동지원·주거지원·법률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

7. 신속하고 적절한 사고수습을 요구할 권리

8. 사고원인과 국가등에 의한 안전사고 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고 그 조사 과정에 참여를 요구할 권리
9. 배상 및 보상 등 피해자 구제를 받을 권리
10. 기억, 추모, 애도를 받거나 할 권리
11. 추모사업·공동체 회복사업 등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후속 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등 참여할 권리
12.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하고 재발방지대책의 수립과정에 의견을 개진하는 등 참여할 권리
13. 그 밖에 「대한민국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따라 인정되는 피해자의 권리

제6조(국가등의 책무) ① 국가등은 모든 국민의 안전권을 보장할 책무를 지고, 안전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재원의 확충과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등은 안전 관련 법령이나 조례, 규칙을 제정·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모든 국민에게 실질적인 참여와 안전에 관한 정보에의 접근을 차별 없이 보장하여야 한다.

③ 국가등은 안전사고의 예방·대비·대응·복구 과정에서 피해자의 조사 요구 및 조사 과정에의 참여 요구에 성실히 응하는 등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약자는 특별히 보호하여야 한다.

④ 국가등은 안전사고의 효율적 예방·대비·대응·복구를 위하여 통합적인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등은 사업을 발주하거나 시행하는 경우 안전사고의 예방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⑥ 국가등은 안전과 관련된 계획과 지침 등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국가등은 피해자에 대한 이해 증진과 효율적 소통·지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피해자의 권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훈련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기업 등의 책무) ① 기업 등은 안전사고의 예방·대비·대응·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국가등의 안전 관련 정책에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② 안전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기업 등은 안전사고를 예방·대비·대응·복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약자는 특별히 보호하여야 한다.

③ 기업 등은 안전사고 발생 및 수습현장을 훼손하거나 안전사고의 원인 및 대응의 적정성 등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기업 등”의 범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안전에 관한 법령 또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생명안전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9조(국민생명안전위원회) ① 안전권을 증진하고 생명존중 안전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생명안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이하 “생명안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생명안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명존중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기본방향 설정 및 제10조에 따른 생명안전종합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산업재해, 자연재난, 교통안전, 어린이 안전 대책 및 그 밖의 생명안전 관련 주요 정책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3. 안전권 증진, 피해자 권리의 보장, 안전약자의 특별한 보호와 관련된 제도의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안전사고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관련된 관리체계의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생명존중 안전사회 관련 예산의 투자 방향에 관한 사항
6. 관계 기관 간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7. 생명존중 안전사회 관련 교육 및 홍보,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안전권 증진과 생명존중 안전사회 건설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생명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

는 사항

- ③ 생명안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④ 생명안전위원회의 위원은 생명안전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⑥ 제3항에 따른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 위촉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1명이 공동으로 된다.
- ⑦ 생명안전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생명안전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안전권을 증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국가 차원의 안전권 보장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이 조에서 “생명안전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생명안전종합계획안을 작성하고, 생명안전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생명안전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권 보장 목표와 방향
2. 안전권 보장을 위한 생명안전 관련 주요 정책의 기본 방향
3. 안전권 보장을 위한 법령·제도의 마련, 정비 등 기반 조성

한 사항

4. 피해자의 권리 보장 및 피해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의 협업 및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5. 안전약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에 관한 사항
6. 안전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생명안전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8. 안전사고의 효율적 예방·대비·대응·복구를 위한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9. 안전권 증진을 위한 자원 조달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
10. 안전사고에 대한 독립조사, 기억과 추모 및 공동체 회복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안전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생명안전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① 생명안전종합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안전에 관한 계획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별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생명안전종합계획과 부합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안전 재정 및 인력 확보 의무) ① 국가등은 안전 관련 사업의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추진을 위하여 요구되는 인력 및 재원을 확보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인력 및 재원의 효과적인 확보를 위한 협의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3장 안전관련기준의 통합적 관리 등

제13조(안전관련기준의 통합적 관리) ① 국가등은 모든 사람의 생명·신체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제적인 기준 등을 고려하여 안전관련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국가등은 안전관련기준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하고, 안전관련기준 및 그 설정 근거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안전관련기준의 적정성 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관련기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안전관련기준의 분야, 범위, 평가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안전지수의 공표·안전수준 진단 및 취약성 분석)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관리 역량의 제고를 위하여 시·도별 및 시·군·구별로 안전수준과 안전의식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지수(이하 이 조에서 “안전지수”라 한다)를 개발·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표된 안전지수를 고려하여 시

·도별 및 시·군·구별로 안전수준 진단 및 취약성에 대한 실태조사·분석을 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지수의 개발·조사, 제2항에 따른 안전수준 진단 및 취약성에 대한 실태조사·분석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안전지수의 조사 항목·방법·공표절차, 제2항에 따른 안전수준 진단 및 취약성에 대한 실태조사·분석의 실시 시기·내용·사후관리, 제3항에 따른 자료의 요청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안전영향 분석·평가) 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을 말한다)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전영향 분석·평가의 대상이 되는 계획 및 사업이 다른 법률에 따라 안전 관련 사전협의 또는 영향평가를 거친 경우, 이 법에 따른 안전영향 분석·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안전영향 분석·평가의 대상·방법·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지원의 원칙 등

제16조(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지원의 원칙) ① 국가등은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등은 이 법에서 정하는 각종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지원을 차별 없이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의 기간과 범위·방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③ 국가등은 피해자 및 안전사고가 발생한 피해지역(이하 “피해지역”이라 한다)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피해자의 의견을 듣고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국가등은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등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구제절차와 피해 입증을 위한 자료 등의 정보를 피해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7조(안전사고에 관한 정보의 제공) 피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가등 또는 관련 기업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사고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안전사고와 관련된 감사원·조사기구 등의 조사 결과와 법원의 판결서

2. 안전사고의 발생에 책임이 있는 국가등 또는 관련 기업 등의 명칭 · 소재지 · 안전사고원인 · 재발방지대책 · 피해지원과 회복에 관한 사항
3. 유해 · 위험 물질 취급 및 노출에 관한 정보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보호하거나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18조(안전사고에 대한 독립적 조사 등) ① 국가는 안전사고의 발생 원인과 수습 과정의 적정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조사(이하 “사고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안전사고의 발생 원인과 수습 과정의 적정성을 규명하고, 정책개선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의 업무(이하 “조사업무”라 한다)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사고조사를 실시한다. 이 경우 조사위원회의 조사 기간은 안전사고의 규모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되 신속하게 실시한다.

1.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크거나 안전사고의 영향이 사회적 · 경제적으로 광범위한 안전사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사고
2.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여 조사를 요구하는 안전사고. 이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사 대상으로 정하는 안전사고. 다만, 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가 개별 법령에 따른 조사기구에서 진행 중인 안전사고는 제외한다.

④ 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3항에 따른 사고조사 및 조사업무
2. 조사보고서의 작성·의결 및 공표
3. 제7항에 따른 조치결과 점검 및 확인에 관한 사항
4. 사고조사에 필요한 조사·연구
5. 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조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이를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요구
2.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3.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 그 밖의 관계 기관·시설·단체 등에 대하여 조사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및 제출된 자료 또는 물건의 보관

4. 관계 기관·시설·단체 등에 대한 사실조회

5.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뢰

6. 조사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한 실지조사

7. 조사대상인 사고조사에 관하여 다른 조사기구의 조사기록, 재판 기록 및 그 밖의 기록의 열람, 등사, 사본의 제출요구 등을 통한 조사

⑥ 국가등은 조사위원회가 발표하는 조사결과 및 정책개선 사항을 존중하고 이행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책개선 사항에 따른 조치계획과 이행방안을 조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조사위원회는 개선권고 사항에 대하여 그 조치결과를 점검·확인할 수 있다.

제19조(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상임위원은 3명 이내로 한다.

② 조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비상임위원은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

람

3. 대학에서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재해·재난관리 및 안전관리 관련 분야 또는 긴급구조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사고조사와 관련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6.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인권 관련 단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7. 수사·정보수집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조사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조사위원회의 위원은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3. 정당의 당원

⑥ 조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⑦ 조사위원회는 제18조제3항의 사고조사 및 조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⑧ 조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에 지원조직을 둔다.

⑨ 조사위원회, 조사단 및 지원조직의 구성 및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기억과 추모) ① 국가등은 안전사고 및 피해자를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등은 제1항에 따른 기억과 추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추모공원·추모기념관·추모비 등 추모 관련 시설의 건립 및 조성
2. 기억과 추모를 위한 관련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
3. 기억과 추모를 위한 관련 자료 및 기념사업에 관한 홍보·교육과 이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배포
4. 안전사고 예방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운영
5. 기념일의 지정
6. 그 밖에 기억과 추모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국가등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이하 이 조에서 “추모사업”이라 한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추모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억과

추모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국가등은 추모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추모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피해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⑤ 국가등은 제3항에 따라 추모사업을 위탁한 비영리 기관·단체에 추모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추모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공동체 회복) ① 국가등은 안전사고로 영향을 받은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등은 제1항에 따른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개발·시행
2. 공동체 복합시설의 설치
3. 그 밖에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국가등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이하 이 조에서 “공동체사업”이라 한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동체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체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국가등은 공동체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동체사업의 효율적 추

진과 피해자 및 피해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⑤ 국가등은 제3항에 따라 공동체사업을 위탁한 비영리 기관·단체에 공동체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체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안전약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 국가등은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안전약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피계획과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지원체계의 확립 등) ① 국가등은 안전약자와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안전약자와 피해자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1. 안전약자와 피해자의 지원을 전담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확보할 것
2. 안전약자와 피해자의 지원을 전담하는 기구를 운영할 것

제24조(피해자 정보 누설의 금지) 이 법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지원, 안전사고 관련 정보의 공개 등 관련 업무에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벌칙) 제24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된 피해자에 관한 정보가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8조, 제19조 및 부칙 제3조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4호의2, 제9조제1항제3호의2, 제34조의7 및 제66조의10을 삭제하는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3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사고조사는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안전사고부터 실시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의2, 제9조제1항제3호의2, 제34조의7 및 제66조의10을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제9조제1항제3호, 제3호의2”를 “제9조제1항제3호”로 한다.